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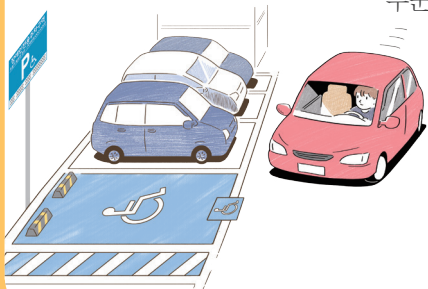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이며,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한 구역입니다.

신고방식

안전신문고, 국민 신문고,
문서(우편, 전자메일, 전자문서 포함),
팩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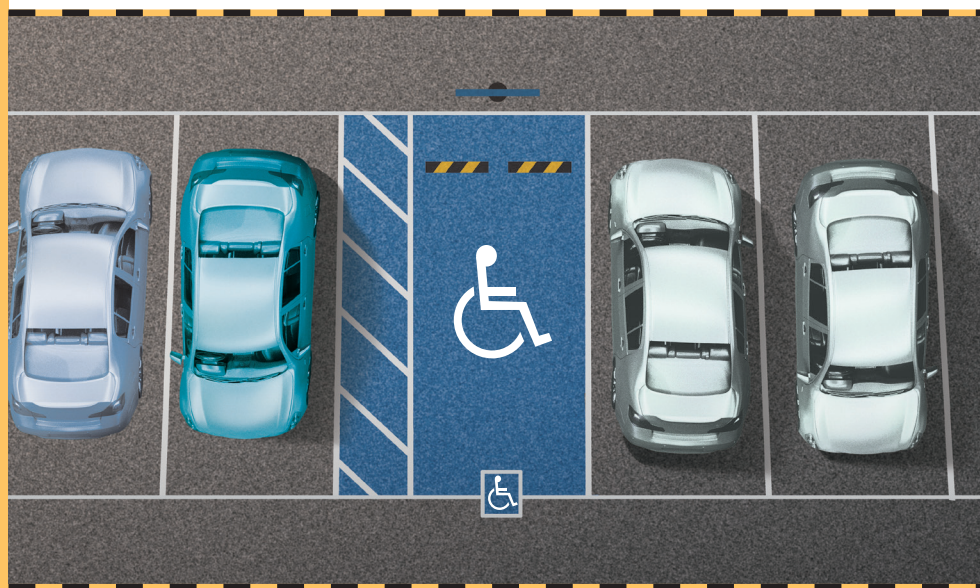
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
누군가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

나와 다름을
이해하고 존중하는
따뜻한 사회를 위해
멈춤 어떨까요?

함께하는 첫걸음의 시작

장애인 전용주차구역

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위반 과태료

주차위반

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

=> **과태료 10만원**



보행장애인 미탑승

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

=> **과태료 10만원**

+ **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**

표지부당사용

표지의 대여, 양도, 위변조등

=> **과태료 200만원**

+ **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**

사망, 차량변경, 표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

표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반납대상임



주차방해 행위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

이중주차 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

방해하는 행위

=> **과태료 50만원**



장애인전용 주차표지

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,
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.

사용 가능 표지

주차가능 표지 중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



<본인 운전용>



<보호자 운전용>

사용 불가 표지

주차불가 표지, 구형주차표지등



<구형표지>



<주차불가표지>